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 | |
|----------|--------|
| 의안 번호 | 관련 555 |
|----------|--------|

제출년월일 : 2023년 4월 3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2023년 3월 13일자로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1.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나.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서울형 기초학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 현황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마.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바.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사.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아.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자. 기초학력보장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차.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2. 본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는 다음과 같음

- 가. 교육감의 고유 권한에 대한 침해 소지
 -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기초학력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교육부장관이 기본적인 권한을 가지고 상위계획 수립하는 국가사무이며 교육감에게 일정 부분을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것은 조례의 제정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사료됨

- 나.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위반 소지
- 「교육기관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의 정보 공개 범위를 초등학교·중학교는 하급교육행정 기관(교육지원청) 단위로, 고등학교는 교육청 단위로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7조제1항에서는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은 법률 위반으로 사료됨

위와 같은 사유로 2023년 3월 13일자로 이송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합니다.

- 붙임 1. 관련 법령(기초학력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해당 조례안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58호, 2021. 9. 24, 제정]

교육부(법무개혁담당관) 044-203-6161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초학력”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한다.
2. “학습지원대상학생”이란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학생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한다.
3. “학습지원교육”이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교육감은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3. 기초학력 보장 관련 제도 개선

4.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각종 조사·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

5.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이하 “기초학력 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내용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①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을 실시하거나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 교원,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이 함께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교과

수업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학습지원교육 및 보조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학습지원 담당교원) ①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 중에서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학습지원 담당교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에게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초학력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제도 개선·연구, 학습지원대상학생 실태조사·지원 및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 등을 위하여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초학력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른 교육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8458호, 2021. 9.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54호, 2022. 3. 25., 제정]

교육부(교육기획보장과) 044-203-6523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학력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소한의 성취기준 등) ①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최소한의 성취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어, 수학 등 교과와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쓰기·셈하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 기능 등으로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의 세부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제3조(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하 “기초학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기초학력종합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초학력 보장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기초학력 보장의 추진 방법
3.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재원 조달 등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제도·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2조에 따른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6. 법 제7조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법 제9조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및 연수에 관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초학력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시·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기초학력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기초학력시행계획을 다음 연도의 학년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제출한 기초학력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기초학력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교육감은 기초학력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4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이하 “기초학력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초학력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기초학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교육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초학력 보장 업무 관련 직위에 있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나. 기초학력 보장 업무 관련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전문직원
 - 다.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기초학력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기초학력위원회를 대표하고, 기초학력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기초학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다.

⑤ 기초학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기초학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기초학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한다.

⑧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학력위원회와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초학력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실시 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는 지필평가, 관찰,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에게 검사 과목·방법 및 일정 등을 알려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평가문항 및 그 결과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이하 “학습지원대상학생”이라 한다)의 선정은 매 학년도의 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입학·편입학·전학 등의 사유로 새로 학생에게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에도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성 및 운영 기준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그 교육 또는 상담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학습지원대상학생 중에서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학습 지도 및 심리 상담 등 학습지원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교과목의 수업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때에는 소속 교원의 현황, 업무 조정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수립한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을 시행할 때 보조인력에 대한 적절한 대우와 근무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보조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업무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이하 “학습지원담당교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습지원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및 관리
2.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교육 및 상담
3. 그 밖에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담당교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습

지원담당교원의 수업시간 수, 업무 분장 등 근무 여건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학습지원담당교원은 학습지원담당교원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공하는 직무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제9조(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법인을 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3호의 교육대학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초학력 보장 제도 개선·연구 및 정책 개발

2. 학습지원대상학생 실태조사와 해당 학생의 학습을 위한 자료 개발·활용 지원

3.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운영 지원

4. 학습지원담당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5.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

③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목표 및 계획이 적절할 것

2.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 관련 전공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가진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법인이나 단체를 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3호의 교육대학

5.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여건을 고려한 기초학력시행계획의 추진 지원

2. 시·도 교육청의 학습지원교육 운영 지원

3. 학습지원담당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및 운영

4. 시·도 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

5. 제7조제4항에 따른 추가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

③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목표 및 계획이 적절할 것

2.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등의 게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또는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또는 해당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부칙 <제32554호, 2022. 3. 25.>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555 |
|----------|-----|

제안연월일 : 2023. 2. 14.

제안자 :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장

1. 제안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학습 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기추진 중인 기초학력 보장 지원의 체계화와 내실화를 유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동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1조~제2조)
- 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교육감은 매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라.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 진단평가 현황 및 결과의 공개, 학습지원 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제9조)

마. 기초학력 보장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기초학력지원센터 및 기초학력보장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제12조)

바. 기초학력 보장 지원 정책에 기여한 사람 또는 학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초학력 보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내 학생의 학력 신장과 학습지원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을 내실 있게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서울형 기초학력"이란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교과별 성취 기준을 의미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을 시행하고, 적정 수준의 학급 당 학생 수 유지를 포함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기초학력 정책에 대한 평가지표 및 결과
3. 기초학력 진단검사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에 관한 사항
5. 학습지원 담당교원 양성에 관한 사항
6. 학습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연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 방안
8. 제11조에 따른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평가와 내실화를 위한 지표를 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서울형 기초학력) ① 교육감은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과 서울의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울형 기초학력의 내용과 수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서울형 기초학력의 진단과 지도를 위한 교원 연수와 교재 개발, 학생 대상 학습·행동·정서의 종합적 지원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 ①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장려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학교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기초학력 진단검사 현황 및 결과 공개) ①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결과를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기초학력 보장법」 등에 따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 일자, 시행 과목, 응시자 수 등의 현황을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운영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한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 및 상담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심리 진단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 이력을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학습 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이 기초학력 보장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조정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지역사회 연계)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대학, 초·중등교육 관련 공공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③ 교육감은 교육지원청별로 지역기초학력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2조 (기초학력보장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보장지원위원회(이하 “기초학력보장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기초학력보장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그 밖에 기초학력보장지원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포상) 교육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결과 공개 등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학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